

12. 농촌진흥기관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 도입

*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(지방농촌지도관 윤종철·지방농촌지도사 엄미옥 031-229-5871,4)입니다.

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란?

새기술 시범 및 녹색기술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 단계까지의 농산물에 대하여 농가나 단지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“기술지원한 농산물” 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

□ 목 적

- 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지원한 농산물의 공동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촌진흥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
- 농촌진흥기관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“기술지원 농산물 공동 표시제” 도입
- 일정규모 이상의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우선실시
 - 2010년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시범사업 확대 검토
- 공동표시제 적용 시범사업 시범요인에 따른 품질 관리 철저
 - 생산, 관리, 수확, 유통 등 영농단계별 정밀관리 기술지도
-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 표시제 업무표장 출원(특허청)
 - ※ 출원→심사→출원공고→등록결정→업무표장 등록
(업무표장은 등록전에도 사용가능)

□ 추진내용

- 시 기 : 2010년~
- 적용대상 : 개소당 5천만원 이상의 국비 시범사업 우선실시 후 확대
- 방 법
 - 시범사업 단지 설치 후 시범요인을 준수하여 고품질 생산지도한 농산물 출하박스 등에 농산물 공동표시제 적용
 - 새기술 시범요인, 출하, 유통과정 등에 관한 철저한 지도
 -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농산물 표시제 사용권한 부여

- 기술지원 공동 표시제 이용 농산물 업무표장 엄격관리
 - 업무표장 이용 위반시 5년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
 - 농산물 표시제 관리를 위한 공무원 지정 운영
 - 업무표장 사용 실적을 매분기 또는 상·하반기 실적 파악

<업무표장>



- 전체형상은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마크로서 안전한 농산물임과 농촌진흥기관의 신뢰도 상징
- 원의 가운데 나뭇잎형상은 자연을 상징하며 안전한 농산물임을 농촌진흥기관이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함으로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신뢰도 표현
-원아래 녹색은 자연을 원 안쪽의 형상은 기술을 표현하고자 인간의 손 형상
- 전체 원의 청색은 농촌의 희망을 상징하며 농업인의 의식선진화를 통한 자생을 의미하고, 주황색은 도시를 상징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 공생을 상징, 연두색은 농촌을 상징하며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상생한다는 의미

□ 보고사항

- 판매실적 보고 : 하작물('11. 12. 20일한), 동작물('12. 7. 20일한)

시군	시범사업명	품목	표시제 이용실적	판매량	금액	비고

- 농산물 공동표시제 이용시 문제점 개선대책
- 우수사례

< 참고 >

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 지원한 **농산물 공동 표시제 이용 관리방안**

1. 목적

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농촌진흥청이 소유한 표시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추진방법

□ (대상 농산물)

일정규모 이상의 시범사업(5천만원 이상)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등록한 “기술지원농산물 공동표시”를 우선 실시 후 전체사업으로 확대하되 지역 브랜드 표시와 마찰이 우려될 경우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게 협의 운영토록 한다.

□ (표시방법)

시범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공동 표시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등록된 업무표장을 사용토록 한다.

□ (사용신청)

- ①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시군의 심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품목, 사용기간, 해당 작목 품질기준 준수, 생산계획, 단지명, 참여농가수 등을 표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기술지원 농산물공동표시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산물공동표시제 사용을 원하는 농가나 최근 2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공동표시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다.

□ (관리)

- ①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**농산물공동표시 업무표장**을 사용할 경우 시범사업 매뉴얼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에 한하여 기술지원 표시를 포장재에 사용토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범사업 농산물에 대하여도 농산물 표시내용 사용권을 부여하며,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(표시방법)

- ① 농산물 표시제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에 대한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,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농산물표시제는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 사용하되 붙임 1을 참고하여 등록된 업무표장을 제작·사용할 수 있다.

□ (책임)

기술지원 농산물 표시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단지나 농업인은 해당지역의 브랜드 명성이나 시범사업 표시제 사용시 승인 품목에 대한 품종, 품질, 유통, 수확후 관리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3. 행정사항

□ (사용실적 보고)

업무표장을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농산물 출하실적과 추진상황을 하작물은 당해년도 12. 20일까지, 동작물은 익년도 7. 20일까지 별표 1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토록 한다.